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 공고 (국내입찰, 견적제출)

< 공 지 사 항 >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견적제출참가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견적제출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견적제출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한국공항공사 견적제출·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계약담당자(견적제출,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김여진(☎052-219-6380)

1. 견적제출 개요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고명 : 울산공항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매립)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 견적공고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55,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예정수량(182.898ton) 기준으로 산정

구 분	연간예정수량 (톤)	단가금액(원)		비고
		처리비	상차운반비	
건설폐재류	72.156	220,000	47,000	VAT 제외, 이윤 및 일반관리비 포함
혼합건설폐기물(①)	101.077	220,000	47,000	
혼합건설폐기물(②)	9.665	400,000	55,000	
합계	182.898	-	-	

- ① 불연성+가연성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페타일, 페도자기 등)에 가연성 폐기물 5% 이하 혼합
- ② 기타+가연성 : 그 밖의 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폐기물 5% 이하 혼합
- ※ 운반단가의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설계 기준거리(30km) 대비 실 운반거리 변동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단가 조정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28. 까지 (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 하도급 : 불허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자료를 e-mail(sohui@airport.c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울산공항 김여진, 052-219-638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8/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0 10:00
- 개찰일시 : 2026/08/10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 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의 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등록한 자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등록한 자
- * 단, 폐기물최종처분업(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추후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한 곳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을 위해서는 전자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횡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한국공항공사 본·지사 전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 공고 목록에 업체정보가 게시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불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같음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불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기타사항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제출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견적제출 대상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내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도민대상자가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견적공고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이 견적제출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를 우선적용 함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건적제출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건적제출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울산공항 시설부 부장 (☎ 052-219-63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김여진(☎052-219-6380)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 붙임 1. 과업내용서(별도 첨부)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 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 첨부) 1부.
6.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청구 매뉴얼(별도 첨부) 1부.

2026. 7. 31.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용역계약 담당자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소속	직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항공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